

• 83년도 신학기 실용영어 4/25
부터 11월을 차 2월이 되겠다.

- [illegible]

김광이(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초안위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정책위원)

가. 지지 의견

나미비아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아동을 포함한 그 어떤 다른 집단보다 더 소외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여성 장애인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넣자는 한국과 남아프리카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우간다는 여성 장애인과 장애 이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들을 넣는 것을 지지하였다. 장애는 동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범주이다. 서로 다른 장애인들이 서로 다르게 고통을 겪고 있고, 여성들은 성과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이중적인 차별과 위험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 1 -

멕시코는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멕시코는 여성 장애인의 상황이 다른 인권 관련 문서들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왔고, 이런 이유로 다른 특별한 인구 집단들과 아울러 서문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나. 반대 의견

아일랜드(유럽연합)는 이 조약의 목적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되고 모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유럽연합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아일랜드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과 장애 아동들 같은 고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집단들을 장애인 전체 공동체 내에서 세분화하여 다루는 제안들은 결과적인 구조적 문제점들을 부각시킨다고 하였다. 유럽연합은 이 제안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하나의 원칙의 문제로서 서문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믿는다고 하였다.

또한 아일랜드(유럽연합)는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포함시키고 여성에 관한 별도의 조항에는 반대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은 모순된 것이라는 시에라리온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하였다. 유럽연합은 여성과 아동이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유럽연합은 장애인의 문제를 너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어느 집단이 가장 많이 또는 가장 적게 심각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지에 관한 논쟁으로 빠져들어서 논의가 지엽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조약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유럽연합은 장애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도 지지하지 않는다. 어느 집단에만 적용되는 특별 조항은 어느 특정한 집단만이 가지는 권리들을 그 조항 속에서 언급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그 조항에서 규정한 것만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애 아동들을 심히 불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CRC)은 인권에 관한 문서들 중에서 무수한 세부 조항들을 지니고 실제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CRC의 불충분한 요소들을 이 조약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접근방식은 장애 아동의 인권 보호를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요르단은 세분화에 반대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말한 아일랜드/유럽연합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요르단은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서문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예멘은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이 조약의 목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들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성인들과는 다르다. 예멘은 여성 장애인들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아일랜드/유럽연합, 요르단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인디아는 여성 장애인은 서문과 일반 원칙들에 포함시키고,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유럽연합, 요르단 등의 주장처럼, 여성 장애인들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노르웨이는 인디아의 견해에 공감하였고,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에 관한 권리가 아동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세르비아와 몬테니그로는 조약이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서문은 이미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성 평등은 조약의 일반 원칙들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한국의 제안의 장점을 인정하였지만, 이 조약은 성과는 무관하게 장애인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제15조(신)의 내용들은 폭력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은 다른 조항들에 통합되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인이 아닌 특별한 경우로서 장애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였다.

다. 유보 혹은 대안적 의견

시에라리온은 아동이 특별한 인구 집단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인구 집단들을 다룰 특별한 조항들”이 이 조약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시에라리온은 아동은 포함시키고 여성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관성이 없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에라리온은 각 집단의 특별한 관심들을 고려한 간결하고 짧은 형태로 된, 여성, 아동, 그 밖의 다른 위험한 상태에 있는 집단을 포함한 하위 인구 집단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특별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필요들은 서문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으며, 여성과 아동에 관한 별도의 조항들의 포함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위원회가 “여러 집단들의 필요들과 입장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강조하지도 않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항에 관한 안을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레바논은 장애인들 간의 그리고 장애인들 가운데서 차별의 위험성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왔다. 레바논은 여성, 노인이라는 특별한 인구 집단을 다루되 너무 세부적이지 않고 제한적인 특별 조항을 신설하자는 데에 시에라리온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

코스타리카는 특별한 인구 집단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하여서는 합의가 되어 있지만, 장애인들 중에서 추가적인 도전들에 직면해 있는 하위 집단들에 대한 최선의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장애인들의 하위 집단들의 계층화에 반대한다는 아일랜드의 견해는 옳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실질보다는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리히텐슈타인은 “실질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형식은 임의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코스타리카의 입장에 공감하였다. 여성 장애인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항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조약의 다른 조항들에 통합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이 규정들의 실질이다. 인권 담론 속에서 특별한 범주들의 사람들의 필요들을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의 표준들이 낮아질 수 있는 이론적인 위험성은 그 표준들을 인권의 표준들에 맞추어 주의깊게 규정함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비슷한 권리들을 다루는 다른 조약들과 이 조약 간의 관계를 다루는 일반 규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타일랜드는 여성 장애인이 “남성들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조약은 오직 한정된 수의 조항들만을 담을 수 있다. 타일랜드는 이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부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접근방식을 찾아볼 것을 촉구하였다.

2) NGO's와 국제기구의 의견

UN의 장애에 관한 특별 보고관은 제15조(신)를 포함시킬 것을 지지하였다. 여성 장애인의 문제는 많은 차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을 특별하게 다루는 조항이 꼭 필요하다. 그 차원들이란 나이를 먹어가는 단계들, 다중적-차별이라는 이러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사회들과 문화적 가치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세계청각장애인연맹(WFD)은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CEDAW¹⁾와 CRC²⁾ 같은 기존의 조약들은 장애 여성 또는 아동의 모든 권리들과 필요들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다른 새로운 집단들도 포함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여성과 아동에 관한 조항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는 보편적 적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긴 하지만 한국, 남아프리카, 멕시코 등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들의 대다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항 또는 일반 원칙들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뢰 피해자 생존자 네트워크(LSN)는 한국의 제안과 우간다, 나미비아, 케냐, 남아프리카 등의 견해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LSN은 지뢰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서 여성들 및 소녀들과 함께 일하는 가운데 사지 절단 수술을 받은 여성들이 추가적인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은 한국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는 거의 인식되어 오지 못했고, 이것은 어딘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여성 장애인들은 “불쌍한 자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들은 흔히 무시당하고, 국가들의 인식 없이는 앞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였다.

3) 기타 의견

홍콩의 장애에 관한 특별 분야의 의견 제출서³⁾

우리는 여성 장애인의 문제가 조약 초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3) "Recommendations on the Draft Comprehensive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ong Kong SAR Submission UN Ad Hoc Committee, 2004. 5. p2.;

"5. Women with disabilities"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issues of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covered in the draft Convention. A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an still be found in many countries, women with disabilities are always under double discrimination and the Convention should respond to this concern. We strongly recommend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must be ensured to be free from any violence and abuse, particularly wom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as they are the most vulnerable group in protecting themselves. The social factors in causing violence and abuse should be recognized and addressed in the Convention."

없다.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발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 장애인들은 항상 이중적인 차별 아래 있고, 조약은 이러한 관점에 대하여 반응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성 장애인들이 그 어떠한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데, 특히 학습 장애를 지닌 여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또한 폭력과 학대를 야기시키는 사회적 요인들도 조약에서 인정되고 언급되어야 한다.

스리랑카 대사 “올위스”(2차 특별위원회)

이에 앞서 장애인권리조약을 위한 유엔 2차 특별위원회에서 조약안 마련을 위한 주요 의제 “차별금지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논의에서 패널리스트인 스리랑카 대사 올위스(Alwis)는 여성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으면서 가정내 부양기능 제공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한계상황을 강조하였다. 여성은 전쟁폭력 외에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장애발생에 노출되고 있으며, 70년대까지도 여성 구타가 미국내에서도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여전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간 역시 범죄로 인식되지 않은 국가가 많고 여성폭력은 장애의 원인이므로 적극 고려되어야 하며 조약에서 보호규정의 최저선을 정할 때 여성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간과해서는 안됨을 강조하였다.⁴⁾

<첨부1: 영문> 신설 제안된 조항 15조 : 장애를 가진 여성들

PROPOSED NEW ARTICLE 15(BIS) : WOMEN WITH DISABILITIES

1. State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enjoyment of full and equal rights and freedoms by wom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equal particip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without any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and/or disabilities.
2. State Parties shall take the following steps from a gender perspective so as to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able to live with dignity in freedom, safety, and autonomy.
 - (a) Include a separate reference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laws pertaining to wom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
 - (b) Incorporate women with disabilities in social surveys and statistics collection efforts and collect gender-disaggregated data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 (c) Protect the motherhood of women with disabilities by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policies and programs for assistance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special need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health care and child-care;
 - (d)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not deprived of their right to work due to their pregnancy or childbirth, and provide the necessary assistances in this regard;
 - (e) Ensure that women with disabilities are protected from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violence at home, institutional facilities and communities.

4)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UN 제2차 Ad-hoc committee 참가결과 보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 2003.7.

II. 여성장애인에 관한 국제적 노력들

1. 1980년 UN에서 개최한 “여성을 위한 10년”세계회의

- 1) 여성장애인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모든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가져야 함을 강조.
- 2) 이 회의 내용 중 “모든 연령 여성장애인의 상황 개선”에서는 UN 가맹국에게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세계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 대해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의 성공과 행동계획의 수행을 지원하고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호소한다.
 - (2)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 (3) 유엔 가맹국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더불어 사회, 직업재활을 위해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 ▶ 부모교육을 통한 장애 예방
 - ▶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일반적, 직업적, 보건상의 교육 실시
 - ▶ 비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확대
 - ▶ 장애아동 훈련에 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족책임을 진 여성장애인이 그러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훈련 시설과 고용 시설의 설치
 - ▶ 장애인의 가정내의 책임에 관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 ▶ 구제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장애아동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장애아를 하루종일 보호하고 있는 여성의 특수한 요구를 인정.
 - ▶ 노동 혹은 훈련, 일상생활에 실제적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 연구조사계획에 있어 특수한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
 - ▶ 피난 장애인 및 전쟁난민 장애인의 이주와 보호를 촉진
 - ▶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보조기구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이를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4) 유엔의 자문기관은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의 요구와 예방 및 재활시책을 통한 상황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과 이 분야에서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 (5) 민간조직 특히 장애인 및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공공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 (6) 평등, 개발, 평화를 위한 유엔 여성의 10년 후반부 행동계획의 실시에 있어 모든 연령의 여성장애인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결정한다.
 - (7) 세계장애인의 해에 관련된 장기행동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모든 연령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2. 1985년 나이로비 제3차 세계여성대회

1) 여성장애인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각국의 NGO에 여성장애인 문제를 세계적으로 환기시킨 계기가 된 자리라 할 수 있음.

2) 총372개항의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중 특별관심분야의 한 부분으로 여성장애인에 관하여 언급.

(1) 장애를 발생시키는 많은 요인으로 전 세계의 장애인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여성임을 강조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가 여전히 제한 받고 있어 “가정과 다른 책임까지 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지적.(제296조)

(2) 위 조항은 행동요강을 제시

▶ 1975년의 장애인권리선언, 1982년 장애인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직업 및 사회참여, 재활조치, 가사책임 수행을 위한 사회 지원 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력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특히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

3. 1990년 비엔나 세계DPI대회

이 대회에서 여성장애인 문제를 주제로 하여 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20개 항목으로 만들어 각 국가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본 대회 원자료 입수 필요합니다)

4.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1) 200여 명의 각국 여성장애인이 참가하여 여성장애인 권리 보장 제도를 촉구하고, 대회의 장애인 시설 부재에 대해 연일 시위를 벌여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 장애 유무를 통합한 세계의 장애 장애인의 요구를 인식시킨 중요한 장이 되었다

2) 이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중의 각 부문인 빈곤, 교육과 훈련, 건강, 폭력, 경제, 힘(power), 인권, 미디어 등에 여성장애인이 고려될 것을 언급되었다.

3)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원문 입수 필요)

▶ 116항에 여성장애인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

▶ 124항에 여성장애인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

▶ 126항에 여성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적절한 법률을 개발하고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

▶ 131항에 무력분쟁하에서 여성장애인이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인권침해를 받으므로 무력분쟁이 중단되어야 한다.

▶ 225항에 다른 취약계층여성들과 함께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부족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5. 1997년 워싱턴 여성장애인 국제리더쉽 포럼

- 1) 북경세계여성대회 후속 조치로 미국의 국제장애인연구소(WID)와 미국 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6월에 워싱턴에서 열렸으며, 각국의 여성장애인 600여 명이나 참가하여 각국의 여성장애인의 목소리와 그 비슷한 정서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뜻있는 포럼이었다.
- 2) 이 포럼은 전세계 여성장애인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사업, 법, 연구, 기관 그리고 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기초적 단계에 있는 여성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3) 포럼의 주요 내용들은 조직적 리더쉽, 교육과 개발, 건강, 가족문제, 폭력, 성(sexuality), 고용전략, 의사소통과 기술, 대중매체와 이미지 등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의 주요 발제문들과 기록을 찾지 못해서, 자료 입수가 필요합니다.)

7. 2000년 대만 제4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결의문

- 1) 여성과 개발에 관한 토론에서, 세계화로 인해 여성, 특히 장애여성, 농촌여성, 무보수직업 종사여성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가난을 심화시키게 했다고 지적했다.
- 2) 폐막하면서 발표된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We believed that globalization gave some women wider opportunities but we are fully aware of its negative impacts; lowering the labor standards, enforcing 'race to the bottom' and feminization of poverty. We need to consider the situation of rural women, differently abled women, and women with non-paid jobs. Women should use the convenience of wider space and opportunities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o strengthen their movements."

8. 2003-2012 아태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 1) 행동계획안에는 우선순위실천 영역으로 여성장애인을 포함시키고, 목표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B. 여성장애인(Women with disabilities)

1. 주요 현안(Critical issues)

19. 여성장애인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중의 하나로,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갖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으면서 가장 대표적인 빈곤층이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가족내에서 더 많이 차별을 받으며, 보건, 교육, 직업훈련, 고용과 수입발생 기회로부터 차단되어 있으며, 사회와 지역사회 활동들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20. 여성장애인은 보다 더 많은 신체적·성적 학대의 위험, 출산할 권리의 부정, 결혼과 가정생활로 편입할 기회의 감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별에 직면한다. 농어촌지역의 장애여성들은 높은 문맹률과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의 부족으로 인해 보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낙인과 거부, 그리고 발전을 위한 기회부정의 부정으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결여한 채로 성장하고 그들의 지역사회로부터 여성의 역할로의 접근을 거부당하게 된다.
21. 몇몇 국가들의 장애인 자조단체들내에서, 여성장애인은 보다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그러한 조직의 회원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우며, 지도자와 행정가로서의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조단체의 옹호활동에서 제기되지 않으며 젊은 여성장애인은 지도자훈련을 위한 대상이 되어 있지 않다.

22. 비장애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주류의 여성운동은 여성장애인의 삶에 최소한의 영향력만 미쳐왔다. 여성장애인은 주류의 여성단체의 회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문제를 특별한 관심사항으로 제기되거나 주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킬 많은 옹호기술이 부족하였다.

23. 정부는 불균형을 바로잡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류의 발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2. 목표(Targets)

목표 3. 정부는 2005년까지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차별적 대책들을 보장해야 한다.

목표 4. 전국적 장애인 자조단체들은 2005년까지 관리, 조직적 훈련, 옹호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들의 활동에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동등한 대표참여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채택해야 한다.

목표 5. 여성장애인은 2005년까지 전국적 주류의 여성단체들의 회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9. 2002년 삿포르 세계DPI대회

1) 이 대회에서는 여성장애인 토론장을 마련하였고, 잠비아, 뉴질랜드, 독일, 말리, 케냐, 일본, 인도의 여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의 인권”,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각국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2) (국제적 장에서 발표된 내용으로서 사례를 통한 실태이기에 참고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당시의 메모를 통하여 기억나는대로 서술합니다.)

잠비아 ▶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여성장애인을 아무도 책임지려 않아서 교육받지 못한 채, 사회성도 결여되어 방치되어 살아가고 있음.

▶ 어느 남성이 여성장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사회적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음.

말리 ▶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농업국가로서 여성은 임출육과 더불어 농업종사로 역할이 규정됨. 장애를 가진 여성은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음으로 해서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배제되고 존재가 부정되는 경험하게 됨.

뉴질랜드 ▶ 팔다리의 선천성 기형으로 태어났으나, 관심과 교육과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받고 살아옴.

▶ 외모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과 분위기 형성의 필요성 지적.

케냐 ▶ 자신이 여성장애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임에도, 가부장 사회에서 남성에게 가정적 주도권이 있다보니, 때로 남편에게서 sex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행동을 감수하라는 의미의 폭언을 듣는다고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와 이러한 태도의 사회적 허용을 지적함.

인도 ▶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딸을 어려서부터 사탕으로 유인하여 성폭행한 친아버지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여성장애인의 책임은 가족에게 맡겨지기에 제재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함.

▶ 또한 많은 여성장애인이 가족의 그늘 아래에서 빛을 못보고 각종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함.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은폐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함.

독일 ▶ 지역내에서의 여성장애인에게 자기방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제도적 제안과, 여성장애인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함을 지적.

일본 ▶ 일본에서도 분명히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기회제공이 불평등하지만 여성장애인 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함.

특히, 어느 비장애남성은 자신의 딸과 여성장애인인 아내가 어떠한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에 가족인 자신까지 오랫동안 상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함.

III. (신설: 15-b)장애여성 해설

1. 국가 당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이 성 그리고(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장애인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의 평등권 선언

2. 국가 당국은 성인지적 관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여성 장애인들이 자유, 안전, 자율 속에서 존엄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97년도 여성장애인 국제리더쉽 포럼의 목적과 같이 저개발국가의 여성장애인에게는 더욱 특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대체로 저개발국가 혹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도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고, 그만큼 경제적 선택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은 장애인에게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난다.

같은 장애인이어도 남성에게는 경제력만 있으면 어떤 상대이든 만나 가정을 꾸려서 부인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갖출 것이 제시된다. 그래서 가장이 되어야 할 남성장애인은 교육 받고 육체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닌 한, 경제력을 확보할 기회들이 보다 많이 주어진다.

그러나 가족들은 경제력이 없는 여성장애인을 가정내에서 보호하거나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차단하게 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장애인이 자신에 관한 사소한 일상도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자기성장을 이룰 기회를 차단당하게 된다.

이러한 배제의 경험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겪는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하거나, 장애가 이해되지 않은 채 가사에 대한 강요와 물성적 억압의 가중된 차별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더욱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으로 여성장애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부족한 이유는, 첫째 각 국가내에서 여성장애인의 고유한 문제가 장애인이라는 물성적 틀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고유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보다 많이 눈에 보여지고 많은 활동을 하는 남성장애인이 우선 인식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장애인들이 집안에서만 생활했지만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날 국제조약을 논의하게 된 발전과정과 마찬가지로이다. 셋째, 성평등 이념이 이미 보편적인 것이 되어서 아직 평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 겪는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차별요소가 가중되면서 점차 복합적으로 차별받는 삶의 패러다임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각 국의 여성장애인 활동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서 구체적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따라서 중첩적인 사회적 차별 속성을 가진 여성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약 내에 자유, 안전, 동등한 참여, 모성권 보호, 적극적 조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별도의 언어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a)부터 (e)까지는 장애인의 권리 또한 성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경험적 사례를 고려하고, 장애에 여성이라는 소외로 인하여 중첩된 차별을 겪는 여성장애인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국제적 논의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a) 여성 및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들에서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별개의 언급을 포함시킨다;

UN의 장애인에 관한 보고서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지적,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의 행동강령의 지적, 비와코 아태장애인 플러스 10년 행동강령 중 여성장애인에 대한 목표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근거 법 규정을 통하여 각 국에서의 여성장애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당연한 실질적 조항이라 생각된다.

(b) 사회 조사와 통계의 수집 노력들 속에 여성 장애인들을 통합시키고, 장애인들에 관한 성별적인 자료를 수집한다; *sb(d)*

성 차별을 줄이고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경험상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장애인에 대해 성별적 인식을 하기 전에 물성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조사통계로 정책을 만들다보면 실제적 기회는 남성장애인에게 주어진다. 대외적 활동이 보다 활발하고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음으로서 순환적으로 사회에서 보다 많이 보여지는 남성장애인이 주요 정책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되는 상황으로 여성장애인은 전생애를 두고 차별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성별적 인식을 가지고 각종 정책입안이 필요하고, 그 전제는 성별적 사회조사에서 비롯됨으로 장애인면서 여성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이다.

(c) 임신, 출산, 산후의 건강보호, 육아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여성 장애인들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보호한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여성장애인을 많이 접해보지 사회에서는 임신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거부를 우선 나타낸다. 특히 중증의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에게 이러한 선입견은 노골적으로 나타낸다. “어떻게 키우려고”, “아이를 낳을 수나 있겠는가?”, “아이가 불쌍하다”, “저런 몸으로도 여자라고...”는 등으로 모성의 감정과 권리를 부정한다. 또한 산부인과에서도 진료를 거부하거나 병원에서의 출산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가부장 사회에서는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빼앗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단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여성장애인은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차별에 부딪힌 경험이 있거나, 증명없이 스스로 자신을 염려하여 미리 모성권을 포기할 수 있다.

출산 이후에도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산후 관리와 육아 지원을 통하여 여성으로서의 건강한 모성권 발휘와 새생명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 요원들이나 의료진, 여성장애인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d) 여성 장애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하여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들을 제공한다;

여성장애인이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비장애여성에게 보장되는 여성의 권리가 부정되거나 이용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일하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은 여성장애인을 해고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기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장애여성이 누리는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일하는 여성장애인이 노동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내 보육시설에는 어머니의 장애에 따라 보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중증의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유지한 채 직접 수유하기 위한 보조 장치 필요하기도 하고,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자신의 아기와 접촉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가장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적은 80년 세계여성대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e) 여성 장애인들이 성적 착취, 가정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보장한다. 

2002년 삿포르 세계DPI회의에서 발표된 여성장애인들의 사례는 모두 폭력에 노출된 이야기들이다. 여성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물성적으로 대우받기도 하지만, 반면 자기방어가 취약한 점을 이용하여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멸시, 방치, 가사노동의 강요 등 유·무형의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많은 나라들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방치와 폭력은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행하여지는 심각성이 있다. 여성장애인들이 각 가정, 지역사회 내에서 겪는 폭력과 은폐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매우 의도적인 접근 모색과 적극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북경세계여성대회의 행동강령에도 다른 취약계층여성과 함께 장애라는 요소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의 부족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국제문서들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IV. 조약 내 성별 주의 규정 발췌

1. 아태지역의 방콕 초안

Article7 권리향유에서의 장애를 가진 여성과 장애를 가진 남성의 평등

1.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여성 아동은 복합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여성과 여성 아동이 남성과 남성 아동과 평등하게[모든][전체] 인권과 근본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초점을 둔, 성-구체적 조치(보호 조치를 포함한)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2. 각 국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남성이 이 조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워킹그룹 초안 검토

워킹그룹 초안에서 성주류화 관점을 충족 성격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전문

- d)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시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철폐에 대한 국제조약, 모든 종류의 여성 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조약,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대우 및 처벌에 반대하는 조약,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한 국제조약을 재천명한다.

◇ 분석

전문 d)에서 기존의 국제조약을 재천명함으로써 장애인 내부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인용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여성 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 조약”에는 장애에 관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즉 여성 내부에서의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지 않다.

- m) 중증의 혹은 중복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곤궁한 상황이나 인종, 피부, 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또 다른 견해, 국가 혹은 사회 기원, 재산, 출생 혹은 또 다른 지위 등을 근거로 중복적인 혹은 악화된 형태의 차별을 받기 쉬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곤궁한 상황에 대해 염려한다.

◇ 분석

중증의 장애인을 고려하고, 나아가서 장애에 관한 ICF 개념을 수용하여서 중복의 차별 사유로 성별을 포함하고 있다. 차별의 악화 사유를 중복의 장애로 강조하여 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염려한다(Concerned)”는 수위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의의에 비하여 미약하게 여겨지므로 “...곤궁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주의한다(Mindful)”로 수정하였으면 한다.

- n)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는 모든 노력 속에 성

별적 관점을 종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분석

이 조항이 성주류화 관점을 포괄하고 있는 총칙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 조항에는 한국초안에서 제시된 제3항과 제5항의 법과 제도 속에 장애여성의 권리와 특별한 요구가 수립되어야 할 것을 일정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제8항의 장애를 가진 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공무원 및 관련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모든 노력” 속에 들어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등과 차별금지(Article7)

1항. 각 국가들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인종, 피부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이견, 국가적 혹은 사회적 기원, 가난, 출생, 장애의 원인이나 유형, 혹은 또 다른 지위 등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해 평등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 분석

성별을 넣음으로써 평등에 대한 보편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으로는 “보호”라는 용어가 권리보장의 실질성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 차별금지가 권리보장의 일환이라면,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평등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 제안한다.

< §6 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 ^(d) 장애인 통계에 관한 조항은 매우, 이 조항은 장애인에 관한 모든 조항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한다.
(3) 사회보장과 적절한 삶의 표준(Article23)

b) 모든 프로그램과 전략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관점을 고려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장애를 가진 여성과 노인들의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가난 탈출 전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4)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Article12)

1. 각 국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정 안팎에서 폭력, 상해 혹은 학대, 방치되거나 부주의한 대우, 성적 착취와 학대를 포함한 폭사 혹은 착취 등에 좀더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하에는 이에 대한 국가들의 모든 부분에서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1조, 3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5조)을 정하고 있다.

◇ 분석

성적착취가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절대다수의 피해 대상자가 되지만 이 권리조약이 향후 몇 년 후에야 각국에서 실효성을 얻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별적 관점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여겨진다. 12502.

V. 3차 회의시 배포한 신설 촉구문

(국문) 국제장애인조약 한국추진연대

여성 장애인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

장애인 중 약 80%는 개발도상국들에 살고 있고, 이들 중 절반은 여성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수 자체가 여성 장애인의 엄청난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발견된 많은 사례들 속에서 여성 장애인들은 성적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일부 여성 장애인들이 성적 착취 아래에서 살아 가고 있는 한층 심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여성 장애인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계속해서 애쓰지만, 그럴 기회들이 그들에게 부정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일부 기회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러한 기회들을 포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남성 장애인들이었고, 게다가 여성들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은 여성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해 왔다. 여성 장애인들은 일생 동안 이러한 온갖 차별들을 겪는다. 장애를 지닌 소녀들, 합법적인 법인격을 갖춘 성인인 여성 장애인들, 장애를 지닌 나이 든 여성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당신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떠한 차별을 겪었는가?

이제까지 많은 대표들이 여성 장애인에 관한 새로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여성 장애인의 문제를 소수의 몇몇 국가들에 국한된 상황으로 보고, 일부는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장애인을 작은 범주들로 조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이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서 서문이나 일반 원칙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의 문제들을 인식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 왔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성 장애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인권에 관한 기존의 여러 국제 지침들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해 왔지만, 이 모든 선언서들은 장애인의 특수하고 독특한 체험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것은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서문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요구되는 여성 장애인에 관한 좀더 특별한 고려들을 단지 여러 조항들과 서문에서 산발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은 심각하게 회색되고 훼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여성 장애인들은 우리의 문제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에 토대를 둔 적정하고도 절박한 요구이다.

여러분이 여성 장애인에 관한 적극적인 또는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간, 심지어 여성 장애인들 간의 평등은 결코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 장애인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도록 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장애인들은 전통적, 사회적, 종교적 이유들로 인하여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지금 은폐되어 있다.

전 세계의 여성 장애인들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고 자존감을 가지도록 지지받아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은 여성 장애인들이 그 밖의 다른 이들과 평등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법은 삶과 관련된 긍정적인 정서들을 지지해주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상과 같이 제4차 위원회가 여성 장애인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한다.